

사회적 기업에 거는 희망과 기대

김혜원*

요즘 ‘사회적 기업’이라는 용어가 언론 지상에 오르내린다. 괜히 멋있는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형용모순인 것처럼 보인다. 사회적이라는 단어와 기업이라는 단어는 의미상의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회적 기업은 미국, 프랑스 등의 선진국에서 실체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으며 사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회에서 사회적 기업의 설립과 지원을 위한 법의 제정을 논의중인 상태이다.

우리에게 아직 생소한 사회적 기업은 ‘기업가 정신으로 조직되면서 경제적 목적뿐만 아니라 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단체’로 정의될 수 있다. 이름과 정의에서 짐작되듯이 사회적 기업은 첫째, 영리기업과 비슷하게 생산, 판매 그리고 고용에서의 자본주의적 합리성을 추구하면서 둘째, 영리기업의 광고에 등장하는 수사가 아닌 실질적인 의미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하며 주로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저소득층에게 무상으로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한다.

선진국에서는 영리기업도, 정부도 아닌 이러한 사회적 기업이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일이 드물지 않다. 예를 들어 1973년에 설립된 미국의 ‘루비콘(Rubicon Programs Inc.)’은 장애인들과 노숙자들에게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여 이들을 기반으로 ‘루비콘 조경’, ‘루비콘 베이커리’ 등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이다. 2003년 한 해 동안 800여 명이 루비콘에서 직업훈련을 받았고 그 중 400여 명은 루비콘 베이커리와 루비콘 조경에서 일자리를 얻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기업은 성장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자를 중심으로 한 자활사업에서 출발해 자활공동체로 발전하여 주식회사로 성장한 경우가 많지 않지만 존재한다. (주)킴윈은 고물상 수준의 자활근로사업에서 출발하여 컴퓨터 해체 및 재활용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으로 발전하였다. 11명의 조합원, 11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2004년 매출 9억원, 2005년 31억원을 매출목표로 설정한 바 있다.

2003년부터 시작된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기업 발전의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다.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익성 높은 서비스가 수익성 때문에 공급되지 못하는 영역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서비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hwkim@kli.re.kr).

스 생산 및 판매 활동을 벌이는 NGO의 근로자 인건비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출발하였다. 우리나라의 턱없이 부족한 사회서비스 공급 상황을 반영하여 많은 NGO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였다. 이 과정에서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헌신적 열정으로 무장하고 동시에 수익을 내는 경영활동의 경험을 갖게 된 일부 NGO들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시장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전망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비전의 공유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담은 사회적 기업법의 제정 활동으로 이어졌다.

한나라당 진영 의원의 「사회적 기업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과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이 발의한 「사회적 기업 지원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여야 모두 사회적 기업법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으며 두 의원의 법안 내용이 큰 틀에서 다르지 않으므로 사회적 기업법안은 빠르면 6월에 늦어도 가을 국회에서는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기업 지원법안에서는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경영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회적 기업의 활동을 촉진, 지원하며 사회보험료 및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업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등 각종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 또는 인증받기 위해서는 일정비율 이상의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공익적 사업을 통해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사회적 목적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진영 의원의 법안에서는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이 중요한 요건으로 제시되고 있고 우원식 의원의 법안에서는 취업취약계층의 고용보다는 저소득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강조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사회적 기업법인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법률’에서는 A유형 협동조합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B유형 협동조합은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동시장에 통합시키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 향후 사회적 기업이 어느 방향에 주안점을 둘 것인가에 대해 추가적인 토론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기업법이 제정되고 본격적인 지원이 시작될 경우 영리기업과 사회적 기업의 관계는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인가? 세 가지 방향의 전개가 예상되는데, 하나는 영리기업 그 자체가 사회적 기업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사회적 목적을 위한 수익환원 활동을 해야 한다. 또 하나의 방향은 영리기업이 사회적 기업을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최근 사회적 책임투자(Social Responsibility Investment)라든가 사회공헌 활동이 기업 활동의 정규적인 영역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향후 영리기업의 중요한 활동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방향은 영리기업과 사회적 기업이 시장을 둘러싸고 이해대립을 보일 가능성

이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상황은 과장되어서는 안된다. 사회적 기업의 공익적 사업의 범위와 그 취지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해된다면, 시장을 사이에 둔 사회적 기업과 영리기업의 다름은 날카로운 긴장관계로 발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영리기업만이 존재하여 영리기업이 신뢰를 제공하지 못해 시장 자체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는 영역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활동은 시장규모 자체를 키워 영리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공익성이 내재적으로 중요한 사회서비스 시장에서는 영리기업과 정부조직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 활발하게 경쟁함으로써 높은 품질의 풍부한 양의 서비스가 공급되어 모든 참여자들이 윈-윈하는 게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빠르면 6월, 늦어도 가을 국회에서 사회적 기업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시장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KL**